



연구조사 및 탐방

# 서울대학교 학생(대학원생, 연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현황**

강 태 응



## 보험(保險, insurance)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말한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보험의 기원은 종교단체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사망 시에는 직접 장례를 지내주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원거리 무역이 부(富)를 축적 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던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 와서 해상 무역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해상보험이 근대 보험의 시초가 되었다.

문명이 고도화 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오늘날 보험은 더 이상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되었으며, 또한 보험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다. 대학 또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학내 시설이나 구성원에게 만의 하나 있을 불미스런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2008년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가 소속 학생(대학원생, 연구원 포함)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의의 사고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과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공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1]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현황

사 고		질 병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영자책임보험	
연구활동	학교시설	구내·외 신입생
중사자	배상책임	치료비 학교행사
상해보험	담보	담보 중상해담보
		학생 의료공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앞서 말한 서울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현황과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사고 관련 가입 보험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가입한 보험은 서울대학교경영자책임보험(이하 “경영자책임보험”)과 서울대학교연구활동중사자상해보험(이하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두 가지이다.

사고 발생 원인이 학교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인가, 아니면 실험이나 연구와 같이 사고자가 사전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진다[표 2. 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비교].

[표 2] 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연구활동중사자 상해보험 비교

구 분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대 상	전체학생 및 제3자	연구활동중사자
관련근거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연구실험환경조성에 관한법률
담당부서	학생처 복지과	연구처 연구지원과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li> <li>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li> </ul>

### 경영자책임보험

경영자책임보험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4조3항 및 서울특별시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학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 때문에 서울대학교 소속 학생 및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사전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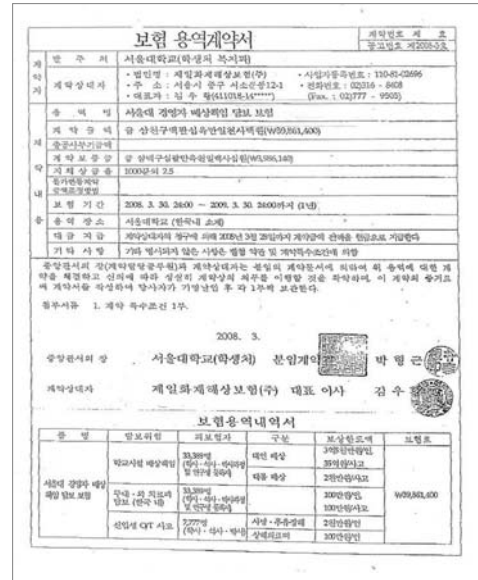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가 가입한 경영자책임보험은 ‘학교시설 배상책임담보보험’, ‘구내외 치료비 담보보험’, ‘신입생 학교행사 중 상해 담보보험’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학교시설 배상책임 담보보험’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장애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하는 사고, 교내 차량을 이용한 공식적인 견학, 현장답사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구내·외 치료비 담보보험’은 학교 활동 중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입은 신체 장애로 인한 치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단, 학교 측에 책임이 없는 사고이어야 하며, 학생 간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학교행사 중 상해 담보보험」

[그림 1] 서울대 경영자책임보험 계약서



은 보험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교행사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보상 절차를 알아보면,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재학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입금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친 후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되며, 보상 한도액은 해당 항목에 따라 다르다[표 3. 서울대 경영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보상 한도액].

[표 3] 서울대 경영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보상 한도액

구 분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1인당 최고 350,000,000원	100,000원
	1 사고당 최고 3,500,000,000원	
	사고당 대물 최고 20,000,000원	
구내·외 치료비 담보보험	1인당 최고 1,000,000원	-
	1사고당 최고 1,000,000원	
신입생학교행사중 상해담보보험	사망, 후유장애 최고 20,000,000원	-
	상해의료비 최고 1,000,000원	

(2008년도 기준)

2008년 기준 경영자책임보험에는 약 3만3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표 4. 서울대 경영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가입 현황].

[표 4] 서울대 경영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가입 현황

구 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구내·외 치료비	신입생 학교행사 중 상해보험	
대 학생	19,209명	3,162명	
대학원생	석 사	7,381명	3,253명
	박 사	2,705명	1,362명
연구원	4,094명	-	
합 계	33,389명	7,777명	

(2008년도 기준)

**연구활동중사자보험**

2003년 KAIST 실험실 폭발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실험·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를 통해 지난 2006년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안법”)이 제정되었다. 연안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중사자의 연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연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중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중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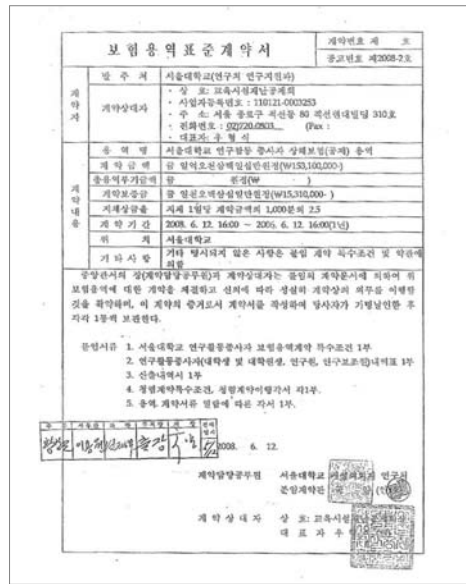
다만, 연안법에서는 연구활동중사자 중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중사자는 사고 발생시 연안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구활동중사자보험은 국적, 소속, 전공 등과 관계 없이 서울대학교가 연구활동중사자로 인정하는 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 금액은 부상 시 최대 1,000만원/1인, 후유장애 및 사망시 최대 1억원/1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35호(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험실 사고의 특성상 후유장애 및 사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서울대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보상 금액].

[그림 2] 서울대 연구활동중사자상해보험 계약서



[표 5] 서울대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보상 금액

구 분	연안법 보상 기준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비 고
사 망	1억원/1인 이상	1억원/1인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사망:3억5천만원/1인
후유장애	1억원/1인 이상	최대 1억원/1인	
부 상	천만원/1인 이상	최대 천만원/1인	

(2008년도 기준)

보상 절차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등의 구비서류를 연구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그림 3]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참고로 [그림 3]에서의 ‘중대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정의)에서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중대사고로 간주한다.



[그림 3] 연구활동중사자보험 보험금 지급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1994.3.29, 2005.6.30〉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008년 기준 연구활동중사자보험에 18,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표 6. 서울대 경영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가입 현황].

[표 6]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중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합계
인원	9,159명	8,442명	351명	35명	17,987명

(2008년도 기준)

## 2. 질병 관련 가입 보험(학생의료비공제)

서울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질병 발생으로 인해 진

료비 또는 치료비 발생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 의료비공제는 앞에서 살펴본 사고와 관계된 보험과는 달리 공제회비를 학생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공제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공제 대상 금액은 10,000 원부터이다.

[그림 4]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http://health4u.snu.ac.kr>) 학생의료공제 안내 화면



[표 7] 학생의료공제 가입대상 및 공제회비

구분	공제회비	납부시기	비고
학부신입생	20,000원	입학등록시	건축학과 25,000원 · 수의예과 30,000원
학사편입생	10,000원	편입학등록시	
대학원신입생	10,000원	입학등록시	치·의학대학원 20,000원
대학원연구생 <sup>1)</sup>	2,500원	학기단위등록시	

(2008년도 기준)

공제회비 금액과 납부 시기는 가입대상에 따라 다르다[표 7. 학생의료공제 가입대상 및 공제회비].

의료공제비 지급 절차는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에서 의료공제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서명을 받은 후 의료비영수증과 함께 대학본부 2층 복지과에 제출하

1)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

면 된다. 학내 보건진료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의 게시판에서 다운받거나 복지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병원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복지과에 진료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표 8. 의료공제비 신청 방법].

[표 8] 의료공제비 신청 방법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보건진료소 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① 의료공제신청서 작성 ※ 보건진료소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 ② 담당의사의 확인 ③ 복지과에 신청서와 의료영수증 제출 ④ 신청일로부터 2~4주에 통장 입금	① 의료공제신청서 작성 ※ 서울대포털-게시판-자료실에서 다운 ※ 복지과에 신청서 비치 ② 해당병원 담당의사의 확인 ③ 복지과에 신청서와 의료영수증 제출 ④ 신청일로부터 2~4주에 통장 입금

의료공제 가입여부는 복지과(880-5072)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병명에 대해서는 1년<sup>2)</sup>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공제신청서에 입력한 통장으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보통 2주 후에 입금된다. 지급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 의료공제비 지급 기준

구 분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도액	200,000원	100,000원
지급기준	• 10만원 이하 : 60% 지급 (본교 보건소 진료비 70% 지급) • 10만원 초과 : 40% 지급	• 5만원 이하 : 60% 지급 (본교 보건소 진료비 70% 지급) • 5만원 초과 : 40% 지급
지급제한	•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 등 보철기구, 치과귀금속보철대, 진료비총액 10,000원 미만 • 동일질환의 진료비 지급횟수는 한학년도에 1회로 제한	
급여자격상실	• 졸업, 사망, 제명, 휴학(질병휴학 제외)	
급여신청기간	• 치료받은 학년도 내에 제출[학기시작일(3월)~학기종료일 그 다음해(2,28)까지]	

(2008년도 기준)

이상과 같이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 현황을 통해 학교업무 수행 과정이나 연구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법에서 제시하는 보상 기준에 부

합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안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도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연구활동중사자보험의 경우, 입학, 휴학, 복학, 졸업하는 과정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보상금액이 법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인정하는 연구활동중사자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자체 직원, 연구원은 연구활동중사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9년 공과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사망 3명, 부상 10명)를 비롯해서, 2008년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사고(화상 1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크고, 작은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사고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과 함께 각종 민원 제기로 귀결(歸結)되고 있다.

세계 10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장려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대학에서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피해 보상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이공계대학 실험실 못지않게 사고위험이 따르는 미술대학의 실습실 환경을 감안할 때 소속 학생도 연구활동중사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사고 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체 직원 및 자체 연구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조속히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소속기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2) 그 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